



인도네시아 Tax Info 2022 년 7 월호

COVID-19 관련 세금 인센티브 추가 연장 규정

COVID-19 로 인해 다수의 납세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2 년 7 월 11 일 인니 재무부 장관(MoF)은 규정 113/PMK.03/2022 (PMK-113) 및 114/PMK.03/2022(PMK-114)를 발표 6 월 30 일 만료된 COVID-19 관련 세금 감면 일부를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함.

In this issue:

1. [Regulations providing tax incentiv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urther extended](#)
2. [Use of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as Tax Identification Number](#)
3. [Taxation for sole proprietorship](#)

PMK-113

PMK-113 은 이전 PMK-226/PMK.03/2021(PMK-226) ([Tax Info January 2022](#) 참조)에 의해 연장되었던 COVID-19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 상품 및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함:

- 적격 수령인이 과세 대상 필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미징수 혜택
- 필수품을 수입하는 적격 납세자는 수입에 대한 제 22 조 소득세 면제
- COVID-19 대응을 위한 필수품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제 22 조 소득세 면제
- 2020 년 정부 규정 No. 9 에 따라 제공된 제 21 조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또한 PMK-113 은 세금 감면을 받는 방법과 e-Faktur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행된 부가세 세금계산서의 정보기입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업데이트된 지침을 제공함.

PMK-113 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2021 년 공급된 세금 계산서의 수정은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신고되어야 함.
- 2022 년 공급된 세금 계산서의 수정은 2023 년 1 월 31 일까지 신고되어야 함.
- 세금계산서 수정이 해당 적격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공급은 부가세 미징수 혜택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세 징수 대상이 됨.
- 본 규정에 따른 일부 혜택에 대한 보건부 장관(MoH) 추천서가 2022 년 6 월 30 일 만료되었으므로 납세자는 필요한 추천서를 MoH 에 다시 요청해야 함.
- COVID-19 대응 필수품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제 22 조 소득세 면제 대상 납세자는 면제 요청서를 세무서에 온라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함;
- 2022 년 7 월 1 일에서 10 일 사이 상기 언급된 PP-29 에 따른 조세 혜택 및 제 21 조 근로소득세 인센티브를 활용하고자 하는 납세자 대상 과세 대상 필수품 인도는 PMK-226 의 규정을 따라야 함.

PMK-114

PMK-114 는 재무부 장관령 No. 3/PMK.03/2022(PMK-3) ([Tax Info February 2022](#) 참조)에 의해 재도입된 세금 감면을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함.

본 규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수입관련 선납법인세(소득세법 제 22 조) 면제;
- 월선납법인세 50% 감면; 및
- 특정 건설업 최종분리소득세(소득세법 제 4 조 2 항) 정부 부담.

PMK-114 경과 규정은 아래와 같음:

- 2022 년 6 월 이후 월선납법인세 50%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해 납세자는 온라인으로 세무서에 재신고를 해야 함. 2022 년 7 월 1 일 이후의 신규 혜택 신청은 PMK-114 발효 30 일 이내에 (즉, 2022 년 8 월 10 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함; 또한
- 소득세법 제 22 조 수입관련 선납법인세 면제를 원하는 납세자는 온라인으로 면제승인을 재 신청해야 함.

Since the effect of COVID-19 pandemic continues to present economic and financial challenges to many taxpayers, the MoF re-extends some of the tax reliefs that have already expired.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사용

납세자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NPWP))는 국세청(DGT)에서 관리하는 납세자의 15 자리 등록 번호이며 주민등록번호(Nomor Induk Kependudukan (NIK))는 인도네시아 주민을 위한 16 자리 등록 번호로 인구/주민 등록국 (Direktorat Jenderal Kependudukan dan Pencatatan Sipil(DGPCR))에서 관리함. DGT 와 DGPCR 간의 데이터 통합을 위해 정부는 단일 등록 번호 사용, 즉 NIK 를 NPWP 로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함.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2022 년 7 월 8 일에 재무부는 규정 No. 112/PMK.03/2022(PMK-112)를 발표했음.

The existence of two different personal databases in Indonesia for taxation (NPWP) and residency (NIK) will end.

인도네시아 거주자 개인 납세자

- 2022 년 7 월 14 일부터 개인 납세자의 NIK 가 NPWP 로 사용됨.
- DGT 는 DGPCR 에서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 세무 행정 데이터를 검증함. 데이터가 레지던시 데이터와 일치하면 NIK 가 활성화됨. 그렇지 않으면 DGT 는 납세자가 실제 조건과 일치하도록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미리 결정된 특정 채널을 통해 유효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납세자에게 명확히 함. NIK 데이터가 NPWP 로 확인되면 DGT 는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함.
- 기존 15 자리 NPWP 는 경과기간(2022 년 7 월 14 일~2023 년 12 월 31 일) 동안 제한된 용도로 사용됨.
- 2022 년 7 월 8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조세 목적으로 등록한 인도네시아 거주자의 경우 DGT 는 NIK 를 NPWP 로 활성화함.
- 2024 년 1 월 1 일부터 세금 및 기타 목적을 위해 16 자리 NIK 가 NPWP 를 대체함.

인도네시아 비거주자 개인 납세자, 법인 납세자 및 정부 기관 납세자

- 2022 년 7 월 14 일부터 납세자는 16 자리 NPWP 를 생성하려면 기존 NPWP 앞에 "0"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16 자리 NPWP 를 사용함에 있어 동등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임.
- 16 자리 NPWP 사용시 DGT 는 조세정보 시스템의 최신 데이터 정확성 관련 납세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것이며 이에 대해 납세자는 승인 또는 필요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음.
- 2022 년 7 월 8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 사이에 납세자번호를 등록하는 신규 납세자의 경우 DGT 는 "0"으로 시작하는 16 자리 NPWP 를 제공함. 납세자는 필요한 경우 앞에 "0"을 생략하여 15 자리 NPWP 를 만들 수 있음.
- 2024 년 1 월 1 일부터 15 자리 NPWP 사용은 중단됨.

지점 납세자

- 2022 년 7 월 8 일 이전에 이미 NPWP 를 취득한 지점에는 사업장 활동 장소의 등록 번호가 제공됨(NITKU(Nomor Identitas Tempat Kegiatan Usaha). 지점에

대한 기존 NPWP 는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조세관련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하는 지속 사용 가능함.

- 2022 년 7 월 8 일 이후에 NPWP 에 등록된 지점에는 16 자리 NPWP 및 NITKU 가 제공됨.
- 2024 년 1 월 1 일부터 지점 납세자는 NITKU 를 거주지와 구별되는 사업장 ID 로 사용함.

2024 년 1 월 1 일부터 다음 행정 서비스에 대해 NPWP 정보가 필요한 당사자는 조세 식별 목적으로 16 자리 NPWP 를 사용해야 함.

- 정부 지출 서비스;
- 수출입 서비스;
- 은행 및 기타 금융 부문 서비스;
- 사업체 설립 및 사업 허가 서비스;
- DGT 가 제공하지 않는 정부 행정 서비스; 및
- NPWP 정보가 필요한 기타 서비스

PMK-112 는 관련 당사자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완전히 시행될 변경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기초 역할을 함. 단일 등록번호의 기술적 측면이 PMK-112 에서 해결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기술적 지침 제공을 위한 규정이 추후 발행될 수 있음.

개인기업에 대한 과세

2020 년 법률 11 호와 2021 년 정부령 8 호는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완전 개인소유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개인기업을 도입함. 다만, 이 기업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며 개인기업의 법적 요건이 일반 유한책임회사와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에 대한 조세등록 요건 및 소득세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제기되었음. 이에 2022 년 7 월 7 일 DGT 는 관련 지침과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 No. SE-20/PJ/2022(SE-20)를 발행함.

SE-20 provides guidance and clarification on tax matters related to sole proprietorship.

기본적으로 SE-20 은 아래 사항을 확인함:

- SE-20 은 개인기업이 법인 납세자로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따라서 연간 총소득이 IDR 5 억 이하인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
- 개인기업은 정관 및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개인기업 등록증과 경영진의 NPWP 를 첨부하여 NPWP 를 등록해야 함.
- 2018 년 정부령 제 23 호에 따른 총수입의 0.5%에 해당하는 최종 소득세율은 연간 총수입이 IDR 48 억 미만인 개인기업에 적용됨.
- 연간 총수입이 IDR 500 억 미만인 개인기업은 최대 IDR 48 억까지 초기 총수입에 대해 50% 법인세율 감면 형태로 소득세법 제 31E 조의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M&A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Budi Prasongko
bprasongko@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Business Tax
Muslimin Damanhuri
mdamanhuri@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